1-26	「중대재해처벌법」 개정(인과관계 추정조항 신설)	(3) 기후부장관

□ 권고 내용

○ 국회의장·법무부장관·고용노동부장관·**기후부장관**·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**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신설**하는 방향으로 **「중대재해처벌법」을 개정**하기 바랍니다.

□ 이행 현황

○ 「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」 및 「제조물 책임법」 등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하는 일부 입법례는 존재

< 관련법규 >

▪ **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5조(인과관계의 추정)** ①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, ②노출 이후 질환발생 또는 기존 질환 악화, ③노출과 질환의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이 모두 증명되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추정. 다만, 사업자가 다른 원인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

▪ **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(결함 등의 추정)** 피해자가 ①제조물이 정상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고, ②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초래되었으며, ③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로 추정. 다만,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

○ 다만,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·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징벌적 성격의 법률로서,

- 원료·제조물 분야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배상책임은 「제조물 책임법」, 「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」 및 「환경오염피해구제법」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旣 반영

□ 향후 계획

○ 해당사항 없음